

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55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1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수정이유

- 의안번호 제3536호의 「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28조의 별표 5 숫자의 일부 오기 사항을 조례개정안의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별표 5의 직급별 정원 중 5급 정원을 본문에 맞게 수정함(안 제28조)
-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숫자의 기관별 정원 및 지도직 상계처리
 - 본 청 : 1실 6국 4담당관 40과 → 1실 8국 3담당관 45과(48개과 208팀)
 - 사업소 : 3개소 7과(26팀) → 2개소 6과(6과 22팀)

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별표 5의 일반직의 5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급	76	48	2	6	6	14
----	----	----	---	---	---	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김포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미래전략국장”으로, “기획정책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②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미래전략국장”으로, “기획정책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③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 중 “기획정책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④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미래전략국장, 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제10조 중 “예산과장”을 “투자유치과장”으로 한다.

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”으로, “기획정책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⑥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정책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- ⑦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하고, 제11조제3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- ⑧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 “도시주택국장”을 “미래전략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- ⑨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6조제2항 중 “클린도시사업소장”을 “공원도시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5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8조 관련)

구 분		총 계	본 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	1,701	-				
정무직	소 계	1	-				
	시 장	1	1				
일반직	소 계	1,660	-				
	2급	1	1				
	3·4급	1	1				
	4급	12	8	1	1	2	
	5급	76	48	2	6	6	14
	6급 이하	1,567	-				
	전문경력관	3	-				
별정직	소 계	6	-				
	5급 상당	1	-				
	6급상당 이하	5	-				
연구직	소 계	2	-				
	연구관	-					
	연구사	2	-				
지도직	소 계	32	-				
	지도관	5			5		
	지도사	27	-				

〈수정안조문대비표〉

제 출 안								수 정 안							
[별표 5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8조 관련)								[별표 5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28조 관련)							
구 분		총계	분청	의회 사무국	작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구 분		총계	분청	의회 사무국	작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	1,701	-					총 계		----	-				
정무직	소 계	1	-					정무직	소 계	--	-				
	시 장	1	1						시 장	--	--				
일반직	소 계	1,660	-					일반직	소 계	----	-				
	2급	1	1						2급	--	--				
	3·4급	1	1						3·4급	--	--				
	4급	12	8	1	1	2			4급	--	--	--	--	--	
	5급	76	45	2	8	7	14		5급	--	48	--	6	6	--
	6급 이하	1,567	-						6급 이하	----	-				
	전문경력관	3	-						전문경력관	--	-				
별정직	소 계	6	-					별정직	소 계	--	-				
	5급 상당	1	-						5급 상당	--	-				
	6급상당 이하	5	-						6급상당 이하	--	-				
연구직	소 계	2	-					연구직	소 계	--	-				
	연구관	-							연구관	-					
	연구사	2	-						연구사	--	-				
지도직	소 계	32	-					지도직	소 계	--	-				
	지도관	5			5				지도관	--			--		
	지도사	27	-						지도사	---	-				